(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개방형 직위(본부장)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개방형 직위(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임용직위 개요

구분	채용 분야	채용 직위(급)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계			1명	
본부	(재)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방형 직위)	본부장(1급)	1명	• 기관장 성과계약 및 이행실적 부서별 추진실적 관리 • 대외협력 및 홍보 총괄 • 조직 · 인사(평정)관리, 경영평가, 감사 총괄 • 사회서비스원 소속직원 외부활동 관리 • 현안업무 및 신규사업 (내부 FT팀) 총괄 • 사회서비스원 예산, 회계 총괄 • 사회서비스원 미 지정 업무 부서별 조정 관리

○ 채용방법 : 공개모집

- 개방형 직위 : 원서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임용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최종 합격 후 임용 절차를 거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자격요건</th></tr>
<tr><td rowspan="2">① 학력 기준</td><td>석사학위 이하인 자</td><td>•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td></tr>
<tr><td>박사학위 소지자</td><td>•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td></tr>
<tr><td colspan="2">② 자격증 기준</td><td>•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 별표5의2 참고</td></tr>
<tr><td rowspan="2">③ 경력 기준</td><td>공무원</td><td>•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td></tr>
<tr><td>민 간</td><td>•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부서단위 책임자는 복수의 직원(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인턴, 파트타임
및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상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임</td></tr>
<tr><td colspan="3">• 그 밖에 ①호부터 ③호까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td></tr>
<tr><td colspan="3">[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정책 기획·인사·예산·조정·홍보, 대내·외 협력, 사회서비스 분야 근무경력*
* 열거된 근무경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개별 경력 불인정)</td></tr>
</table>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 11.(수) ~ 11. 25.(수) 18:00

○ 원서교부: 재단 홈페이지,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1) 방문접수: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접수확인 필수

*우편봉투 겉면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개방형 직위 지원서류'** 문구 표기

- 접수처: (우)5140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본관동 2층,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 앞

○ 문의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055-230-820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 1)

❍ 지원서 1부(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부(서식 4)

- 제2차 적격성 심사(면접심사) 시 발표(PPT)예정으로 연관성 있게 준비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5)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최종 학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박사 학위는 석사·학사 학위,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홈페이지 출력 또는 공단 방문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를 위해 가입기간을 "전체기간" 선택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 인정 범위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 불가)
-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증명서류,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첨부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비상근)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면접심사 최종예정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 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기타 개별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 제출
·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
예: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전형 방법 및 합격자 발표

❍ 공고기간 : 2026. 11. 11.(수) ~ 11. 25.(수) 18:00
❍ 공고게시 : 재단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클린아이 잡플러스(행안부) 등
❍ 재공고 가능 여부
① 접수결과 응모자 수가 공개모집 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② 자격기준 심사결과 적격자가 채용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③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 다만, ①과 ②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연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③의 경우에는 다음 차수 채용으로 대체함.

❍ 전형방법: 제1차 적격성심사-서류심사, 제2차 적격성심사-면접심사

- 서류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

❍ 면접일시 및 장소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 (https://gn.pass.or.kr)에 게시

- 일시·장소 : **2026.12.7.(월)예정**,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회의실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평가 기준

 • 서류심사: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이 정해진 기준 적합성 등 서면심사

 • 면접심사: 심층면접(PPT포함) 실시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격자 발표: **2026.12.9.(수)(예정)**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용 예정일: **2026.12.14.(월)(예정)** ※ 단, 재단 사정상 임용일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지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524)

❍ **보 수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에 따름

❍ **계약기간 :** 2년 * 직무수행 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채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업무 시작 및 인건비 지급함에 유의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지원 후 반드시 유선으로(055-230-8207)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접수 누락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 기관에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진위여부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2차 적격성심사(면접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여도 **추가 합격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 (☎055-230-8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